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10.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을 훈령 제명 등에 반영하고, 청렴 혁신활동의 추진기반을 제도화하며, 직무관련 비위에 ‘엄벌주의’를 명문화하는 한편,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- 가. ‘반부패·청렴시책’을 연도별로 수립하고,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‘청렴시책 점검회의’ 개최의 근거 마련(안 제23조의2 신설)
- 나. 청렴 정책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‘청렴 혁신 자문위원회’ 설치(안 제23조의3 신설)
- 다. 직무 관련 비위행위자를 동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‘엄벌주의’를 명문화(안 제21조의3 신설)
- 라. 변경된 부처명 반영(훈령 제명 및 안 제1조 등 개정)
- 마. 타부처로 이관된 조직(전기위원회)을 삭제(안 제25조 개정)
- 바. 이 외 경미한 자구의 수정 및 재검토기한의 연장 등(안 제4조 제5항 등)